

한경협

ESG Bulletin

2024. 09 | 제 7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슈, 인권 관점에서 바라보자

신석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한국경제인협회 ESG경영자문단)

지난 '22.7.28 UN 총회에서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a healthy, sustainable environment)'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에도 기후변화와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양한 국제 인권 규범들에 기초해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인권의 선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지난 '24.7.25 발효된 EU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서도 기업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a healthy, sustainable environment)'을 존중하며 환경 훼손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실사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경'과 '인권'의 상호 의존성과 연계성에 주목하고 양자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UN 총회,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 결의안 채택

2022년 7월 28일,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169개 회원국 중 찬성 161표, 기권 8표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universal human right to a healthy, sustainable environment)'을 최초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모든 국가 및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개별 회원 국가들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법적 권리로 도입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으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universal human right)의 일부로 포섭되어 국제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며 다양한 형태로 법적 효력을 발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후변화 등으로 특별히 영향을 받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개별적인 인권이 현재에도 인정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며 '기후변화'와 '인권'의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UN총회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결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UN결의안으로 인해 향후 전 세계 시민들은 국가와 기업이 기후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단순히 부탁하며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이라는 권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UN결의안은 이러한 소송을 더욱 촉진 시킬 것으로 보인다.

(2) 인권에 기초한 기후 관련 소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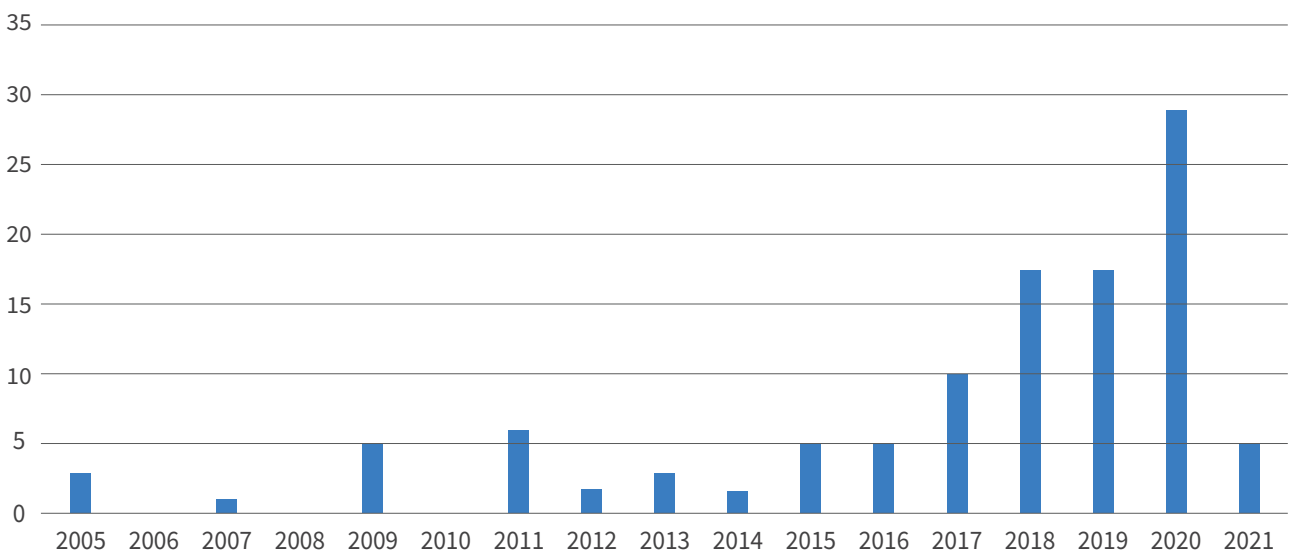
기후변화 관련 소송 중 '인권'에 기초한 소송(rights-based climate litigation)만을 별도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12건 정도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인권침해를 직·간접적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전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된 2015년을 기점으로 '인권에 기반한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인권이 아닌 기후 관련 협정이지만,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파리협정에서는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과 이행과정에서 인권을 존중, 촉진,

고려할 것을 기대하는 인권관련 조항을 ‘전문 (paragraph)’에 포함시키며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전문’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러한 파리협정 체결 이후에 인권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관련 소송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연구가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보편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UN 결의안이 채택되기 이전에 이루어 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향후 인권에 기초한 환경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권에 기초한) 기후변화 소송 제기 건수(2005~2021.5)



※ 자료: Rights-based litigation in the climate emergency: mapping the landscape and new knowledge frontiers(2022)

(3)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Shell 판결

2021년 5월 26일,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글로벌 석유회사인 RDS (Royal Dutch Shell)의 사업모델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추구하는 목표 실현에 역행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위반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피고인 RDS에게 기업정책을 통해 셸 그룹사의 활동으로 초래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감축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금까지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법원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명령한 사례는 Shell 판결이 최초이다.

Shell에게 기업정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최소한 45%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법원의 근거는 네덜란드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이다. 물론 이러한 불법행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상 의무 또는 명시적 법이 아니더라도 불문법(unwritten law)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의무는 아직 없으므로 ‘불문법(unwritten law)상 주의의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불문법(unwritten law)상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파리기후변화협정 및 다양한 국제적 인권규범들을 근거로 삼으며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법적 구속력이 없던 인권 관련 국제규범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조항을 매개로 기업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근거로 Shell에게 기업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을 명령한 것이다. Shell은 예전부터 이미 그룹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정책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서 인권에 포함된 환경 이슈

CSDDD에서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a healthy, sustainable environment)’에 기초해 기업이 환경 또는 자연자원을 훼손시킨 경우 동시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 훼손(유해한 토지변경, 수질·대기 오염, 유해한 배출, 과도한 물 소비, 토지 황폐화 등) 또는 그 밖의 자연자원에 대한 영향(산림벌채 등)이 ①식량의 보존과 생산을 위한 자연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훼손시키는지 여부 ②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는지 여부 ③ 위생시설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는지 여부 ④개인의 건강, 안전, 정상적인 토지 이용 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소유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⑤인간의 웰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Annex Part I, point 15).

(5) 시사점

UN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 결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등의 문제에 전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며 환경 이슈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권’을 선언한 것이다. EU 공급망 실사지침 역시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을 실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환경과 인권의 연계성이 강조되며 ‘기후변화 및 환경’이라는 이슈가 ‘인권’의 범주 내로

명시적으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인권’이라는 권리관계와 연계되며 소송이라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다투어 질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경’과 ‘인권’의 상호 연관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며 이러한 연관성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인 ESG 경영체계 및 실사체계를 구축해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ESG 소송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